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05189호

시행일자 2023. 7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백신(스카이코비원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8869(2023.7.20.)
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\*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(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-4197호, '23.7.20)받았음을 안내하며,

\*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: 스카이코비원(12→15개월)( '23.7.4.)

○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('23.7.20., 식약처)

제품명	유효기간 연장	제조번호	당초 유효기한	연장 유효기한
스카이코비원멀티주	12→15개월	U0722004	2023-08-01	2023-11-01

4. 다만,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(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)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 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7.24일 이후 배송되는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 등에 적극적인 안내 등 협조 요망
- 특히, 접종기관에서 기 수령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유효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접종에 우선 활용하고 유효경과 시 폐기 요망

\* 붙임 :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 끝.

## 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 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